

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(안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및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반도체클러스터”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중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.
2. “반도체산업”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3. “위원회”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말한다.
4. “조정위원회”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를 말한다.
5. “소위원회”란 법 제9조제6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소위원회를 말한다.
6. “사업시행자”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.
7. “조성 계획”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조성, 발전방향 등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, 영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요건

제4조(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 지역) ① 반도체클러스터는 법 제2조제2호가목·나목

및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영 제2조제5호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
2.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여 공고한 지역

제5조(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) ①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은 법 제11조

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국내외 기업·기관의 입주 의향서, 분양계약 현황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통하여 입주 수요가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가능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 것
2.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·용수·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하고, 이에 관한 공급기관의 공급 가능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
4.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

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할 때에는 반도체 설계·제조·위탁생산·소재·부품·장비·패키징 등 해당 클러스터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3장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절차

제6조(지정계획 공고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의 공고 없이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계획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지정계획의 목적 및 지정 대상 지역의 범위
2.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 및 심사 기준
3. 신청서 및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작성 지침
4. 신청서류 제출기간·장소 및 방법
5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항 및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양식 등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.

제7조(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의 신청)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2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와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성 계획의 증빙자료는 제6조에 따라 안내한다.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제5조에 따른 지정 요건

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신청서류의 수정·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법 제2조2호가목·나목 및 영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존 지역을 대상으로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립·승인된 기존 개발계획, 육성계획 또는 이에 준하는 계획과 조성 계획 간의 정합성 및 기존 계획의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조성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.

제8조(지정의 사전 검토 및 조정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신청 내용 및 관계기관의 검토 의견 등을 사전에 검토·조정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정 신청 내용을 사전검토 및 조사·분석 할 수 있다.

1. 제7조에 따른 조성 계획 및 증빙자료에 대한 서면검토
2. 지정 대상 지역 및 주요 기반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
3. 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 청취
4.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결과를 종합검토

③ 소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지정 여부에 관한 의견 및 필요한 조정사항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④ 조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검토 의견,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토대로 지정 신청 내용을 검토·조정할 수 있다.

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·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정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에 상정한다.

⑥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조성 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 계획의 승인 및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9조(산업통상부장관의 직접 지정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도체클러스터를 직접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.

1. 국가 반도체산업 전략상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민간 신청에 의한 지정 절차로는 적시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접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 등은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마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직접 지정은 제6조에 따른 지정계획의 공고 없이 상시 추진할 수 있으며, 직접 지정의 검토·조정, 조성 계획의 승인,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.

제10조(지정 및 공고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에 따라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다.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반도체클러스터의 명칭·위치 및 면적
2.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
3. 지정 목적 및 지정일
4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장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

제11조(지정의 변경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② 경미한 사항 외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변경 내용이 포함된 조성 계획 변경안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
2. 변경 전·후 비교표 및 관련 증빙자료
3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변경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2조(지정의 해제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다음 각

호의 자료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지정 해제 대상 반도체클러스터의 명칭 및 위치
 2.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이후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관한 자료
 3. 재정지원의 교부 및 집행 현황에 관한 자료
 4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 해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-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자료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

제13조(재검토기한)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0000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2026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